

리걸 클리닉 (Legal Clinic)의 이상과 현실

2013년 11월

변호사 김주영



302

LEGAL
CLINIC



목 차

1. 리걸클리닉(Legal Clinic)이란?
2.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의 리걸클리닉
3. 리걸클리닉의 목표와 이상
4. 리걸클리닉의 현실



리걸클리닉(Legal Clinic) 이란?

리걸클리닉의 정의

- 로스쿨에서 사용되는 실습식 교육방법.
- 의대생이 실제로 환자를 치료하며 능력을 연마하듯 실무 교수의 지도하에 지역 주민을 상대로 무료법률지원 및 상담 봉사활동을 실시하며 실무능력을 배양하는 것을 말함.



About LSC

Student Life

Clinics

People of LSC

Need Legal Help?

¿Necesita asistencia legal?

News & Highlights

History

Mission

Philosophy and Culture

Facility

Contact

Directions



About the Legal Services Center

Located in Boston's culturally diverse Jamaica Plain neighborhood, the Legal Services Center is a general practice law firm that provides legal counsel to over 1,200 clients annually, some of whom are very poor, but many of whom can and do make co-payments or pay on a lower-than-market basis for the service they receive.

The Center, Harvard Law School's oldest and largest clinical teaching facility, offers students an opportunity to gain practical legal experience and earn academic credit by handling real cases for real clients under the supervision of Clinical Instructors who are experienced practitioners and mentors. The Center sponsors up to 70 students each semester through several clinical courses offered at HLS and, during the summer, sponsors a program for volunteer law students from across the country.

[Harvard Law School의 Legal Services Center 홈페이지](http://www.law.harvard.edu/academics/clinical/lsc/about/index.htm)

<http://www.law.harvard.edu/academics/clinical/lsc/about/index.htm>



관련법령

법학전문 대학원 설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교육과정) ① 법학전문대학원은 학생에게 법조인으로서 가져야 할 가치, 법률지식 및 전문기술 등을 지도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는 교과목을 개설하여야 한다.

1. 법조윤리(法曹倫理)
2. 국내외 법령 및 판례 정보 등 법률정보의 조사
3. 판결문, 소장(訴狀), 변론문 등 법문서의 작성
4. 모의재판
5. 실습과정

② 법학전문대학원은 제1항제5호에 따른 실습과정을 통하여 학생에게 사회에 봉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야 한다.

법학전문 대학원 평가기준 해석지침

법학전문대학원 평가기준 3.5.1.6 해석지침

임상과목이라 함은 학생이 학내에 개설된 리걸클리닉이나 법률상담센터 등에서 민·형사 등 실제사건의 의뢰인 면담, 사실관계 및 증거자료의 정리, 법률정보의 조사, 문제해결 방법에 대한 의견서 등 법문서 작성 과정을 임상과목 담당교원이나 변호사 등의 지도하에 실제로 주도적으로 수행함으로써 경험을 통하여 분쟁을 효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지식 및 능력을 키우고, 심층학습의 동기부여를 하는 과목을 말함.



리걸클리닉의 요건

- 학내에 설치: 리걸클리닉은 학내에서 행해지는 임상실습을 지칭함 (인턴쉽이나 익스턴쉽과는 구별됨)
- 실제사건의 수행: 리걸클리닉은 민·형사 등 실제사건의 의뢰인 면담, 사실관계 및 증거자료의 정리, 법률정보의 조사, 문제해결 방법에 대한 의견서 등 법문서 작성을 다루어야 하므로 모의사건만으로는 부족하며 실제사건이 필요함
- 학생들의 주도적인 역할: 리걸클리닉은 학생들이 임상과목 담당교원이나 변호사 등의 지도 하에 실제로 주도적으로 실제 사건을 수행함으로써 경험을 통하여 분쟁을 효율적으로 해결 할 수 있는 지식 및 능력을 키우고, 심층학습의 동기부여를 하는 과목임. 따라서 학생들이 단순히 실제사건의 수행을 참관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면 실제 사건에 있어서 주도적인 역할 수행이 필요함.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의 리걸클리닉

리걸클리닉의 운영경과

-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은 교과목으로서의 리걸클리닉인 임상법학과목의 운영을 위하여 '임상법학과목 운영지침 (2010. 8. 31.제정)'을 제정하고 이에 따라 임상법학과목을 운영
- 2012년까지는 법학연구소의 법률자문실 및 각 센터를 통하여 외부 변호사와 협력간계를 맺고 임상법학 과목을 운영함.
- 그러나 학내 임상실습과정이라기 보다는 학기 중에 이루어지는 인턴쉽에 가깝게 운영되면서 수강인원 부족이 야기됨 (2011년 1학기에 9명, 2학기에 7명, 2012년 1학기에는 수강인원 부족으로 폐강, 2012년 2학기에 7명)
- 2013년부터는 학점을 기존의 1학점에서 2학점으로 늘림. 아울러 학내에서 프로그램을 짜서 학기당 15명을 한도로 실시를 해 봄. 1, 2학기 공히 15명식의 인원이 수강을 하였으나 실제 수강을 희망하는 학생들은 훨씬 더 많았음



2013년도 리걸클리닉 프로그램의 개요

주차	내용	방식	수행담당자
0주차	오리엔테이션	강의 및 질의응답	전임교원 지도변호사
1주차	변호사업무수행(lawyering)의 기초	강의	지도변호사
2주차	민사사건처리 시뮬레이션	강의 및 연습	지도변호사
3주차	형사사건처리 시뮬레이션	강의 및 연습	지도변호사
4주차	행정사건처리 시뮬레이션	강의 및 연습	지도변호사
5주차~14주차	법률상담 참관 및 실제사건 수임 및 수행에의 참여	실습	지도변호사
15주차	사건수행보고 및 평가	세미나	전임교원 지도변호사

- 2주차부터 4주차까지의 민사, 형사, 행정사건 처리 시뮬레이션은 변호사시험 기록형문제를 모의기록으로 활용하여 각종 서면을 작성해 보고 그 것을 실제 사건이라고 생각하고 어떻게 접근할 것인지를 검토하는 방식으로 행함.
- 5주차부터 14주차까지는 학생들을 3개조로 나눈 후 매주 1회 서울지방법변호사회가 서울고등법원청사 1층에 마련한 무료법률상담소에 학생들과 더불어 가서 상담을 하고 그 상담과정에서 수임한 사건의 수행에 참여하는 형태로 진행함.
- 1학기에는 2건의 사건 (민사, 형사 각 1건씩)을 수임하여 수행하고 기존 수임사건 중 1건에 참여하는 형태로 진행함.
- 2학기에는 서울대 공익법센터에서 연결한 장애인 지하철추락사고의 항소심 초기과정을 수행하는 형태로 진행하고 2건 가량의 신규 수임사건에 참여하는 형태로 진행함.

리걸클리닉의 목표와 이상

리걸클리닉의 목표

- 교육 및 훈련: 경험을 통하여 분쟁을 효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지식 및 능력을 키움
- 동기부여: 실제 법률서비스 수요자들을 접함으로써 법조인으로서의 사명을 발견하고 심층학습의 동기를 부여함.
- 봉사: 법률적 지식을 갖고 지역사회 및 사회적 약자에 대한 봉사를 실시함.





리걸클리닉은 과연 필요한가?

혹시 아래와 같은 이유로 하고자 하는 것은 아닌가?

- 로스쿨의 본산인 미국에서 중요시 여기니까
- 관련 법령에서 요구하고 있으니까
- 다른 로스쿨도 하니까



하지만 이런 생각은 없는가?

- 현실적으로 다른 교육도 하기 바쁘기 때문에 임상훈련까지 할 여유는 없다.
- 실습훈련은 결국 취업 후 직장에서 할 수 밖에 없지 않은가.
- 굳이 필요하다면 임상훈련 방학 중에 인턴십을 통해서 하면 되지 않나?
- 과연 학생들에게 봉사할 여유나 능력이 있는가?



그럼에도 리걸클리닉이 필요한 이유(임상외과의 대비)

- 의대교수들이 의대생들을 데리고 회진을 도는 것은 실제 질병을 앓고 있는 환자를 만나게 하기 위한 것
- 임상실습을 통해 실제 문제와 봉착한 환자 (의뢰인)을 만나게 될 때 보다 현실적인 학문으로서의 의학(법학)을 알 수 있게 됨
- 죄의 문제를 다루는 형사사건, 관계의 문제를 다루는 가사사건 뿐만 아니라, 돈의 문제를 다루는 민사사건, 상사사건, 권력의 문제를 다루는 행정사건의 경우에도 사람에 대한 이해가 필요
- 실제 사건을 다루어 보거나 실제 의뢰인을 만나 보면 법학교육을 보다 경험적인 관점에서 바라볼 수 있음
- 임상법학을 통해 실제 사건, 실제 의뢰인을 만나면서 새로운 직업적 소명을 찾을 수 있음.
- 취업 후에 직장에서 이루어지는 실습의 한계 (체계성, 규범성, 학문과의 연계성)
- 방학 중 이루어지는 인턴십의 한계 (목표의 상이함, 단기성)



리걸클리닉의 현실

리걸클리닉의 제약요인

- 학생들이 너무 바빠서 많은 시간을 투입하기 어려움 (학점취득, 변시준비, 취업준비)
- 학생들의 수업시간이 너무 타이트 해서 법정참관이나 의뢰인 면담을 위한 시간을 내기 어려움
- 학기제의 제약 (실제사건은 한 학기 동안에 끝나지 않으므로 학생들이 실제사건에 지속적으로 관여하기 어려움)
- 동기부여에 있어서의 제약 (Pass/Fail로 하므로 동기부여가 약함)
- 지도인력의 한계 (지도변호사가 교육훈련 뿐만 아니라 사건수행의 상당부분을 직접 해야 하고 사건에 따른 책임도 온전히 부담 하므로 부담이 큼)
- 제도적인 한계 (학생들의 법정변론, 교도소 접견 등에서의 제약)
- 실제사건 실제 의뢰인의 한계 (임상법학에 적합한 실제 사건, 실제 의뢰인을 만나기 어려움)



리걸클리닉의 발전을 위한 제언

- 외부 법률상담센터와의 제휴관계 강화:
서울지방변호사회가 서초동 법원청사에 설치한 무료법률상담실
- 계절학기와의 연계강좌개설 : 계절학과 연계된 강좌 예컨대 1학기여름 계절학기, 2학기겨울계절학기 이런 식으로 진행해서 최소한 20주이상을 하고 학점도 4학점 이상으로 진행.
- 평가제도 도입: 평가를 Pass/Fail으로 하되 소수의 참여학생들 중 우수학생을 선발하여 Honor를 부여하는 식으로 동기부여
- 국선전담변호인 사무실과의 연계하여 국선변호사건 특히 국민참여재판사건에 집중적으로 참여하는 프로그램 시행
- 공익인권법센터 및 외부의 공익단체를 중심으로 하는 프로그램도 개발
- 실무에 종사하는 변호사들을 방문학자, 초빙교원, 겸임교원 등으로 적극 초빙하여 학내 리걸클리닉에 투입되도록 하는 등 지도인력 및 지원인력을 확보하여야 함
- 장차 로펌 등의 재정지원을 받아 부설법무법인에 해당하는 Legal Services Center를 지역사회 거점에 개설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음